

[별지 제7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문서번호 ULMUS-202005011-01

2020. 5. 11.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담당 부서장)

제 목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불임과 같이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붙 임 :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내용 1부.
2.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1부. 끝.

(주)얼머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손양철 (인)



작 성 자 : 김공범(부장)

전화번호: 02-2051-5123

(붙임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

1.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성명 (한자)	직위	입원여부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임기 (만료일)	업무범위	겸직 직위 및 업무	주요경력 ¹⁾	자격요건 확인결과
김지연 (金芝娟)	팀장	부	831224	2020.5.1	2년 (2022.5.1.)	준법감시,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	현직 (팀장)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학력) 2002.03~2006.02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2006.1~2016.07: DB금융투자	적격

주 1) 주요 경력란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학력 또는 기관에서의 근무경력과 최근 5년간의 근무경력을 연월 단위로 기재

2.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해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	선임일	해임일	해임사유 ¹⁾	비고 ²⁾
최은아	761008	2019.04.01	2020.04.30	개인사정(사직서 첨부)	이사회 추천 및 선임

주 1) 해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결의서, 사직서 사본 등) 첨부

2) 향후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정 및 절차 등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심사표

성명 (한자)	김지연(金芝娟)	직위	팀장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1. 법 제28조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적격	
2.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8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력: DB금융투자	
3.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적격	
종합 의견 위험관리책임자로 적격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5월 1일 (주)얼머스인베스트먼트 금융회사 위험관리책임자 김지연 (인) (주)얼머스인베스트먼트 금융회사 대표이사 손양철 (인)			

* 제28조제3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첨부서류】

1. 이사회 결의서
2.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3.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법 제28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위험관리책임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6.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붙임 2)

준법감시인 선임 심사표

성명 (한자)	김지연(金芝娟)	직위	팀장
심사항목		심사결과	비고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다음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인 없을 것 1)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		적격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각 목(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력: DB금융투자	
3.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적격	
종합 의견 준법감시인으로 적격함을 확인합니다.			
2020년 5월 1일 (주)얼머스인베스트먼트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김지연 (인) (주)얼머스인베스트먼트 금융회사 대표이사 손양철 (인)			

*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중 해당하는 목을 기재하고, 관련 경력을 상세하게 기재

【첨부서류】

1. 이사회 결의서
2.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3.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근무확인서(경력증명서 등)
5. 외국인의 경우 금융법규상 준법감시인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및 현재 근무처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6.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사 직 원


담당	부사장	대표이사
김광범		

소 속	CRE팀 (구내전화: # 109)				
사 번	012	직 급	팀장	성 명	최은아
입사일자	2019. 04. 이		주민등록번호	761008 - [REDACTED]	
주 소	[REDACTED]			(Tel	[REDACTED]
현 재	[REDACTED]			(Tel	[REDACTED]
퇴직후	[REDACTED]			(Tel	[REDACTED]
퇴직희망일	2020. 04. 30				
퇴직사유	일생상의 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이 퇴직하고자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본 사직원을 제출
주/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은아 는(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얼머스인베스트먼트를 퇴직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기타 보관중인 회사의
금품·서류반납 등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최종퇴직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근무하겠습니다.
2.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규상의 제반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재직하는 동안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제반비밀을 퇴직후 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퇴직에 따른 제 금품청산에 있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절차를
지연시켰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금품 지급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서 퇴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만일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서약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회사에서요구하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겠습니다.

제출일: 2020년 4월 21일
신고인: 최은아 

㈜얼머스인베스트먼트 귀중